

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설명서

무배당 KB손보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(신탁제공용)



◆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의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상품 설명

구분	내용
상품제공기관	■ KB손해보험
상품유형	■ 이율보증형보험
상품특징	-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월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이율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확정 적용하는 상품입니다. - 이율보증기간(만기) : 1년, 2년, 3년, 5년
적용이율에 관한 사항	-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“이율보증형 적용이율”을 적용하며,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. -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“이율보증형 적용이율”을 결정합니다. 지표금리는 국고채수익률, 회사채수익률, 지방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. 단,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하며,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. -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, KB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* 홈페이지 : www.kbinsure.co.kr > 공시실 > 보험상품공시 > 퇴직연금 > 퇴직연금사업자공시 > 원리금보장상품현황
중도해지에 관한 사항	-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(상품변경 포함)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 - 중도해지이율 - 이율보증형 1년 : 경과기간 6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%, 경과기간 6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% - 이율보증형 2년 :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%, 경과기간 12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5% - 이율보증형 3년 : 경과기간 18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%, 경과기간 18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% - 이율보증형 5년 :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적용이율 X 50%,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적용이율 X 60% 경과기간 36개월 미만 적용이율 X 70%, 경과기간 48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% 경과기간 48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%
특별 중도해지	- 다음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-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-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-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-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-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- 가입자가 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 -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-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- 전출입 등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만기 후 운영방법	-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 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-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. - 단, 확정급여형의 경우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,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.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.

□ 기타 안내사항 (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)

구분	내용
예금자 보호여부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1억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 * 회사가 운영주체인 DB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상담 및 분쟁조정 에 관한 사항	이 상품에 대한 문의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(www.kbinsure.co.kr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, www.fss.or.kr), 한국소비자원 (국번없이 1372)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고객콜센터 1544-9520 <http://pension.kbinsure.co.kr>